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3. 8. 21(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2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모두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3-30-077~114)

####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2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에스케이텔레콤(주) 이하 38개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안)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개요입니다. 먼저 조사배경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복잡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초고속인터넷 최저 보장속도, 손해배상 규정 등의 주요약관 내용을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하나,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고지의무 소홀 등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경과는 지난 5월 초에 이용약관 절차 미준수 등 가입시 이용자 권익침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2일~6월 30일까지 사실조사를 했고, 7월 1일~10일까지 추가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8월 14일까지 시정조치(안)에 대한 피심인 및 미래부에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아래 대상사업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가> SKT입니다. '10년 4월부터 '13년 5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이용약관에서 정한 변상금 관련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 등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설명서를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박스 이용약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동전화 서비스 약관인 'WCDMA 이용약관'의 내용과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가입신청서상의 약관의 주요내용이 상이하여 이용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로써 보고를 생략드리고, 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KT입니다. KT는 '12년 6월부터 스마트(전자)계약서를 이용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서를 서비스 가입시 교부하지 아니하고 익월 청구하는 요금고지서에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인쇄하여 고지하였으며, '10년부터 '13년 5월까지 가입한 이용자에게 약

관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T의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약관인 'WDCMA 이용약관'의 내용과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가입신청서상의 약관의 주요 내용이 상이하여 이용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구체적인 사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 LGU+입니다. '10년부터 '13년 5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아래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약관인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내용과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가입신청서상의 약관 주요내용이 상이하여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SK브로드밴드입니다. '10년부터 '13년 3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이용약관에서 정한 변상금 관련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이 누락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한 사실과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설명서 교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의 내용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약관의 주요내용이 상이하여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아래 구체적인 사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엠, 현대HCN 및 씨엠비(MSO)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0년부터 '13년 5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입시에 약정할인, 손해배상, 최저보장속도 등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설명서를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약관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가입자 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법성 판단입니다. <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주요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SKT 및 SKB가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서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주요내용의 일부를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와 KT가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나>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은 행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LGU+, SKT, KT, SKB 및 5개의 MOS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LGU+ 등 38개 사업자가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약관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설명서를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한 행위는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시정조치(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SKT, KT, 및 SKB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누락한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거나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시정명령(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과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번 건의 경우 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부당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자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과징금 부과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T, KT 및 SKB에 대해서는 일부 주요내용이 누락된 계약서의 교부 및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하며,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을 명령하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그다음

LGU+와 MSO 등 38개 사업자가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한 행위는 법령이나 이용약관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이러한 행정조치는 상당히 미세하고 마이크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위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자료에 보면 3개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혹은 초고속망의 매출이 18조원, 12조원, 10조원 이렇게 되어서 40조원으로 마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이 초고속망이나 휴대전화를 거의 공기처럼 끼안고 살고 있다는 증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 하는 우리 쪽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고충, 불편, 고통, 애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일선에서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서 선제적으로 살피고 또 공기의 혼탁을 막고 소소한 불편이라도 바로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용자보호 행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원이 뜨겁게 제기되지 않아도 이용자정책국에서 알아서 이렇게 소소한 데까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 김대희 상임위원

- 이 사안은 작년 9월에 역시 권고사항으로 의결해서 이용약관에 대한 복잡한 내용을 가입자들이 손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약설명하는 것을 배포토록 했고, 그것에 따라 취해진 행위들에 대해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도 설명서에 일부 포함되고 빠진 것들을 지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입하면서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서라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어지간히 단출하지 않고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사업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비록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사무국의 권고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 양문석 상임위원

- 정부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 이용자보호 영역이고, 주요내용이나 이용자 계약서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봐 주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동안 큰 규제들, 그다음에 이슈가 될 만한 규제들, 언론들이 좋아할 만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이 놓쳤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 부분을 짚었다는 부분들에 대해 아주 의미 있는 보고이고 의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업자들이 대국민서비스에 대해 부실한 영역들을 정부가 짚어서 대국민서비스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후 이용자정책국이 과징금 부과하고, 영업정지하는 영역에 대한 고민 이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살살이 더 많이 받

굴해서 이용자보호와 이용자 서비스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면 좋겠다, 최근에 나온 이용자정책국의 고민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마지막 페이지에 “따라서, SKT, KT 및 SKB에 대하여는 일부 주요내용이 누락된 계약서의 교부 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중지하고’ 했는데,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이런 표현은 국어법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하고’로 바꿨으면 합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문구를 바꾸시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관한 건 (2013-30-115)**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은 ‘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사업자가 재심청구 前 신청하는 ‘고지방송 집행정지’는 재심청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외없이 ‘인용’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집행정지 신청 처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08년 7월 25일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심의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지침에는 방송심의와 관련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재심청구 前에 ‘고지방송’ 집행 정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원심결정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 없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처리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집행정지 신청 25건 모두 ‘인용’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 없이 ‘인용’ 결정해야 할 집행정지 신청이 그간 일일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처리됨으로써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은 처

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기한도래 직전에 신청하면 안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내용입니다.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집행정지 등)에 “위원회는 집행정지 신청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향후 '13년 8월말까지 담당과장이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세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재심·집행정지 등 관련 절차 및 법규, 집행정지 신청 및 결정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다.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2013-30-116)**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다>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 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2012년도 매체교환율」과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시청점유율 산정방법입니다. 시청점유율은 기본적으로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와 주식·지분을 소유한 다른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에 일정비율(매체교환율)을 적용하여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산에 있어서 반영비율은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은 그대로 100% 전부 반영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비율만큼 곱하여 합산하며, 일간신문이 방송사업 경영 시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전부 반영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유비율만큼 곱하여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체교환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체교환율 조사결과는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매체이용행태 측면의 조사한 내용과 시장에 있어서 광고매출액 등을 조사해서 작년도 매체교환율 측정한 결과,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력을 1로 봤을 때 일간신문의 영향력은 0.45로 파악되었습니다.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입니다. 환산의 대상은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경영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6개 일간신문입니다. 환산의 방법은 일간신문의 구독률에 매체교환율(0.45)을 곱하여 환산한 시청률을 구한 후에 2012년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청률의 합(32.954)으로 시청률을 나누어서 일간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였습니다. 환산결과 조선일보 계열 7.784%, 중앙일보 계열 5.796%, 동아일보 계열 4.540%, 매일경제 계열 1.77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입니다. 산정대상은 텔레비전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234개 방송사업자의 369개 채널과 방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6개 일간신문이었습니다. 대상기간은 201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이었습니다. 주요 산정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10년도와 '11년도 시청점유율과 비교할 경우에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지상파방송의 시청점유율을 보면 KBS 36.163%, MBC 16.002%, SBS 11.408%, EBS 1.935%, KNN 1.6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상파방송사 연도별 시청점유율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SO 계열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엔엠(CJ계열) 9.384%, 챔프비전(티브로드계열) 2.822%, 씨유미디어(C&M계열) 1.960%, 현대미디어(HCN 계열) 0.66%, 그리고 씨엠비홀딩스(CMB 계열) 0.2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SO의 연도별 시청점유율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편성·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주)조선방송(조선일보 계열) 8.785%, (주)제이티비씨(중앙일보 계열) 7.878%, (주)채널에이(동아일보 계열) 5.874%, (주)매일방송(매일경제 계열) 3.310%, (주)와이티엔 1.776%, (주)연합뉴스티브이 0.77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볼 때,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그 내용을 공표함과 아울러서 향후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이 내용을 심사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SBS 시청점유율이 11.408%, CJ계열이 9.384% 사실상 이렇게 보는 것이 애매한 것이 SBS만 11.408%이고, SBS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유료방송시장의 PP들, 이것을 합해서 나온 계산입니까? 아니면 지상파 SBS 단일 채널에 대한...

○ 박동주 미디어기반정책과장

-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KBS 계열, MBC 계열, SBS 계열, EBS도 플러스 1, 2, 3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계열이라는 개념을 잡아 주어야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 4년 내내 저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시청점유율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하고 이 조사된 내용들이 각종 정책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작은 조직으로 이 부분들이 다른 방송영역 전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 방송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항상 참고자료로 또는 주요한 판단근거로 계속 인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용의 과정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후에 미디어기반정책과가 이러한 부분들



을 적극적으로 각 방송정책을 판단할 때 자료로 서브자료든 메인자료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의 정책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주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SBS와 CJ 계열이 1% 상간에서의 경쟁률을 가지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유료 방송 PP 지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전 동의영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미래부와 공동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SBS가 현재 이러한 수준에 있으면 어떻게 더 상승시켜 줄 것인가, 지상파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이 간극에서 수많은 정책들과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책 반영에 또는 정책 발굴에 있어서 주요한 데이터로 삼기 위해서는 미디어기반정책과의 고민들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들이 되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그냥 한 번 보고하고 끝나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CJ E&M 계열이 '11년도 시청점유율보다 0.2% 정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9.168%에서 9.384%로 약진했고, 나머지 SO 계열은 전체적으로 전부 퇴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박동주 미디어기반정책과장

- 저희들이 이유까지는 명확히 분석하지 못했지만 CJ E&M 계열의 tvN이나 여러 프로그램에서 작년에 많은 시청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특별히 M&A가 이루어졌다는 기억은 없는데 추가 PP를 더 가진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 박동주 미디어기반정책과장

- 작년에 추가 지분소유가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CJ와 티브로드는 2010년도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박동주 미디어기반정책과장

- CJ 계열, 지금 CJ E&M 부분이 그때는 성립되지 않았고, 온미디어와 나누어져 있어서...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나누어지기 전 자료는 그대로 있습니까?

○ 박동주 미디어기반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양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마다 하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재허가나 이런 데만 쓰고 말 것이냐, 지난번 회의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까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이런 중요한 자료를 재활용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지상파는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료방송이나 종편을 보면 아무래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오늘 의결하면 전체 데이터를 다 공개하는 것이지요?

○ **박동주 미디어기반정책과장**

- <붙임 1>에 있는 자료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런 데이터들은 학계 연구자들이나 언론사 담당 기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 말고 <붙임>자료는 빠짐없이 다 공개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3년 전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주로 그쪽에서 추진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미디어기반정책과 조직도 보강해서 정식 과도 시키고 우리 인력들도 전문성을 강화해서 이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방송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 주셨는데,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규제도 있지만 믿을 만한 통계를 관리해서 정확한 시장현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강되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청점유율이라는 것이 원래 6월말까지 해야 하는데 이번에 늦어진 것이, 물론 조직개편이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사유는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제가 통계에 대해 약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통계자료의 표기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전에 통계 나온 것이 각사로 말하면 이것이 광고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일반인들이 또는 학계에서 보면 어느 매체가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통계자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자료를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붙임 1>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는 전체가 36.163%, 본인은 32.566%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1.935%, 1.935%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방송인데 16.022% 나왔고, 포항문화방송(주), 청주문화방송(주) 이렇게 해서 16.027%, 16.026% 이렇게 쪽 나와 있는데, (주)문화방송 전체가 16.022%이고 그 아래 포항문화방송(주), 울산문화방송(주) 등 지역방송들이 다 (주)문화방송 통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아니면 자체 내 것까지 플러스해서 (주)문화방송 전체보다도 포항문화방송(주)이 더 많은 시청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밑에 (주)문화방송이 길게 똑같이 (주)문화방송 전체를 16.022%로 해 놓고, 각 지역 문화방송은 없애고 본인 <표>가 쪽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해야지, 전체를 합산하면 100%가 나와야 하는데 2,000%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오해가 아니라 산술통계 표기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장, 이해가 갑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뒤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주)SBS는 전체 11.408%고, 그다음에 (주)KNN,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은 별도의 자기 시청률입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 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가면 계열사마다 그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전체 합해서 씨제이 계열해서 (주)씨제이헬로비전을 8.705% 해 놓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이런 것들은 표기하지 말고 오른쪽 본인이 0.002%라든가, 이것이 0.002%인데 전체 8.705%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뒤까지 다 그렇습니다. 티브로드 계열의 전체는 위에 한 줄 올려놓고 그 밑의 것들은 전체

로 합산하지 말고 자기 것들만 내놓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포션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데 이것은 굉장히 혼동을 줍니다. 이왕 인쇄가 됐는데 이것은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배포하지 말고 통계학자, 수학자에게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 박동주 미디어기반정책과장

- 전체 자료는 방송 법령상 제69조의2와 제50조의2에 본인의 시청률에 특수관계자의 시청률을 합하고, 그다음에 지분을 소유한 방송사에 그만큼을 전부 다 합해서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칸을 이렇게 나누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 이경재 위원장

-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수학의 문제입니다. 의결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통계학의 문제입니다. 법 해석을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합산한다는 것은, 대표를 할 때는 합산해서 넣지만 개별사들은 본사 것을 합산해서 '대구문화방송의 시청률이 16%'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혼동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통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로 혼동을 일으키니까 다시 한 번 통계학자들 여기에 관여한 분들에게 상의를 드려서 완전하게,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것을 합산해서 발표하니까 완전히 오도가 됩니다.

####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료 생산 자체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만들어 온 자료로 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다시 표기할 수 있는 방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것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통계전문가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양문석 상임위원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방송공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 단일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MBC는 자회사이고 그다음에 SBS는 계약관계입니다.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SBS와 지역민방은, 제일 밑에 보면 SBS 칸을 텃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회사든 계열회사든 독립적인 주식회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사실상 모회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 번째 문화방송에서 문화방송 칸을 트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1개만 고치면 되는데 미디어다양성위원회까지 갑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칸을 트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정리해서 바로 발표하시면 되지요.

#### ○ 이경재 위원장

- 칸을 트는데 전체 문화방송 계열은 KBS나 EBS처럼 칸을 트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아래 것들은 전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항문화방송이 문화방송 전체보다도

더 많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 표기가 됩니다. 그 아래 것들은 표기하지 말고, 본인 것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만 내버려 두면 이것들은 이미 위에 문화방송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삼중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은 퍼센티지인데 합해서 2,000% 나오는 통계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인문 고등학교 나온 실력만 가지고 볼 때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해가 갑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통계자료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결하되, 이 부분의 자료는 다시 보완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라. (주)채널에이의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 (2013-30-117)**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주)채널에이의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주)채널에이의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채널에이가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7월 1일 (주)채널에이가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 12월에 방통위에 변경신고를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은 방송법 제15조 규정을 (주)채널에이가 위반한 사실을 인정합니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향후 법 준수를 잘하겠다, 그리고 개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채널임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십사 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행정처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사실은 (주)채널에이는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방송법 제15조제3항제2호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 변경 후 346일이 경과하여 변경 신고해 온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처분의 종류로서는 이에 대해서 방송법 제108조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국의 과태료 처분(안)은 (주)채널에이의 변경신고 지연 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이며 최초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마.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3-30-118~122)**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안건 마>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각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조선방송에 대해서는 매반기당해 채널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12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도 계획한 투자금액을 ‘13년 12월말까지 이행하며,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고,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고자 합니다. (주)JTBC,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인 ‘12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도 계획한 투자금액을 ‘13년 12월말까지 이행하고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고자 합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편성위원회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승인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입니다. 승인조건 위반사항은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 및 사업계획서 중 주요사항인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공정보도특별위원회·편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사업자별 승인조건 위반사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주요 의견입니다.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에 대해 TV조선은 ‘13년도 상반기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이 44%로 승인조건 35% 이상을 준수하여 시정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시정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에 대해 종편4사는 사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선정되었으며 경제 상황 등의 악화로 매출이 축소되어 콘텐츠 투자가 감소했고 그로 인해 재방비율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자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뉴스Y는 ‘12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당초 24억원을 제출하였지만 취재비와 편집비 등 일부 투자금액이 누락되어 이를 포함시킬 경우 총 51억 6,000만원으로 정정하여 제출해 왔습니다. 다음 공적책임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TV조선이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와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뉴스Y는 편성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에 대하여 TV조선은 금년 상반기 승인조건은 이행하였지만 작년도 하반기 미이행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에 있어서는 종편4사가 승인 신청시 예상하지 못한 사업환경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되지만 종편PP 도입의 주요 목표인 콘텐츠 시장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MBN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변경 승인 요청도 예상되므로 추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편 뉴스Y의 '12년도 콘텐츠 투자실적은 결산보고서 검토 결과 총 51억 6,000만원으로 확인되어 투자계획 49억 8,000만원을 달성한 것으로 봐서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적책임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해 TV조선과 뉴스Y는 9월 중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TV조선의 경우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와 공정보도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뉴스Y는 편성위원회를 지금까지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구체적으로 못한 이유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못 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공적책임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점수 영역인데, 지금 2년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으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가 있을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해 놓아야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두 방송사가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의 경우 특별위원회입니다. 지나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두 회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 이유도 체크해 놓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은 전형적으로 약속위반이지 않습니까? 제작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말대로 2개 할 줄 알고 준비했는데 4개가 됐다는 등, 경제 환경이 안 좋았다는 등, 광고환경이 안 좋았다는 등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적책임 영역에 있어서 기구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이때까지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이것은 시정명령 영역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패널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관련해서 지금 종편 4개사가 공적·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선이나 개편 요구가 한 5가지 있지요? 무엇 무엇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주로 8VS나 수신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그것이 한 5가지가 되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첫째로, 랩법 부칙에 광고 자율영업 시한 3년을 연장해 달라, 둘째로, 사업계획서가 과대표 장으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제 와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를 해 달라, 셋째로, 재허가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자격이 있는지 종편사들이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권을 따면 무슨 것이든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공약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사업자가 '과다 선정되어서 우리가 힘듭니다.' 그것은 초심과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고 결국은 자기들 귀책사유를 정부의 책임으로 호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명령이 나가면 내년 2월 재허가 시기 이전까지 어떤 결과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이것이 해소가 됩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 예측으로는 그쪽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적었던 계획 내용들을 100%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아마 시정명령 위반이 예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결국은 그렇게 종편들에 의해 원천적으로 문제가 벌어졌고, 그 점에 대해 수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양 위원님 말씀대로 종편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사항, 그리고 가용한 자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 종편 행정을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엄격하게 체크해 나가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오늘부터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결 유보를 요청하는데, 대신에 보완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적책임 관련 위원회를 종편4사, 그다음에 뉴스Y 외에 그동안 다른 종편 3사는 다른 위원회들을 다 만들었는지, 그것 관련해서 언제 회의했는지 회의록을 첨부해서 자료를 보강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종편3사도 현재 이것들을 형식적으로 유지·운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실질적으로 공정보도를 위해 고민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의한 날과 회의록을 동시에 첨부해서 자료요청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TV조선과 뉴스Y는 왜 지금까지 구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고 시정명령할 것인지 또 다른 패널티를 줄 것인지 다시 평가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정도 사항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안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정명령 수준에서 패널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료를 보강해서 종편4사와 뉴스Y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공적책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들을 더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 이런 것을 다 보고받았고 그때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사무국에서 올려온 대로 의결하고,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담당 과에서 조사해서 따로 보고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외주제작 부분은 작년에 잘못됐지만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정명령을 하면 시정명령이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가 문제인데 이것은 사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미 MBN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해 놓았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면 다른 회사들도 우리 환경 변화에 따라 하기 어렵겠으니 사업계획을 변경할 테니까 승인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두 번째가 콘텐츠 투자계획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종편을 승인한 것도 콘텐츠 활성화 부분에 상당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 변경이 예상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업자들이 낸 대로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종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것에 따라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사업자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

면서 이것을 줄여가겠다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한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적책임 관련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일단 시정명령하되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 양문석 상임위원

- 지금 시정명령을 하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을 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법률적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9월 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도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그다음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양문석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나 상당히 이것은 악질적인 행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점수가 심사과정에 있어서 높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방송국을 시작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구성하지 않고 시정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있었다는 것은 단계적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도불순 그리고 악질적 행태 이런 개념에서 바라 봐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벌백계해야 하는 이러한 고민들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다음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위반이고 이것은 심사위원들을 속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고 또 시정명령 정도로 갔었을 때 그렇게 억지로 만든 이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에 제대로 수렴이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엄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전에 짚어내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짚어낸다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볼 것 다 다시 보고,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시정명령이라면 그때 시정명령하고 다른 최대치가 있으면 다른 패널티를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방송법의 제재규정을 보면 이것이 법 규정에 의해 위반된 것이 아니고 승인조건 위반 사항입니다. 법에 승인조건만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승인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 양문석 상임위원

-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시정명령 이후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김 과장은 시정명령 이후 단계적으로 영업정지까지 가는 것이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의견을 냈으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일단 시정명령을 받고 이대로 하고, 그다음에 공적책임 관련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봐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여기 보니까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해서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시한을 줬습니다. 그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시한을 뒤서 했기 때문에 강력한 시정명령이 되니까 일단 경위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정명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다른 분들이 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위반한 것이 재방비율을 미이행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재방비율은 정부가 법 규제를 통해 제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낼 때 콘텐츠 투자계획과 같이 재방비율을 굉장히 낮게 가지고 옴으로 해서 장밋빛 환상을 그려놓고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재방비율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는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초안을 검토할 때는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분을 넘겨서 집행하듯이 재방비율도 같이 낮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실무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투자가 계획이 보충되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재방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 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더 강한 처벌 이야기도 하셨지만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더 강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것도 시정명령 내리고 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우리가 엄중하게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바. 방송국 허가사항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3-30-123)**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바> ‘방송국 허가사항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방송국 허가사항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한민족방송단과방송국에 관한 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국 허가증에 기재된 공중선 출력을 초과해 KBS한민족방송단과방송국을 운영하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5일에 KBS가 현재 미래부 서울전파관리소에 KBS 변경신고를 했다가 그 후에 다시 철회한 이후, 그동안 계속 위반해온 상태였다가 지난 6월 중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고 그 후 7월 22일에 본 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경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전파법 위반사항입니다. 전파법 제25조에서는 허가증 기재 범위에서 방송국을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KBS는 10kW로 규정된 허가증 기재범위를 초과하여 100kW로 출력을 증강해 결국 KBS한민족방송단과방송국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심인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장비는 이미 변경했고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선처를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안)입니다. 전파법 제25조,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허가사항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100만원이며,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혼신 등 기술심사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번 위반행위가 최초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과태료를 50% 감면한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이것을 들여다보면 별 것 아닐 수도 있는데 양쪽에서 다 조금씩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KBS는 KBS대로 대처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로 허가신청 접수를 했을 때 소관이 잘못됐으면 제대로 된 대로 바로 이첩이 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뒤로 지연되다가 정부조직개편, 그 전에 먼저 KBS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일이 저질러졌고 그 뒤로도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부조직개편 및 여러 가지 일로 미루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자 측도 마찬가지로 같이 반성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허가받은 것이 10kW이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50만원 감경해 줬는데 그러면 앞으로 10kW로 합니까, 100kW로 합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100kW로 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100kW….

○ 홍성규 상임위원

- 왜 그렇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장비가 한 20년 전 장비인데 10kW로 하는 것은 한민족방송에 대한 출력 방송권역이 러시아, 중국까지 잡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알고 있습니다. 100kW가 필요합니다.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행정행위로 100kW로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KBS가 우리에게 변경신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7월 중에 이미 변경허가 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 홍성규 상임위원

- 해 줬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현재는 합법적으로 됐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감면 50만원보다는 KBS 측에도 잘못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런데 지금 현행이 법령규정에 보면 이것은 명시적으로 과태료 처분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단계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1원 과태료는 어떻습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1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과태료 1원이라는 상징적인 법 절차적인 개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1원을 부과하자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1원에 동의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전과법 시행령까지는 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감경, 증감의 범위가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 금액이 최소의 금액으로 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기준 금액의 50%이니까 법적으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 이경제 위원장

- 이상으로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5분 폐회 】